

취업지도위원회규정

제정 2012.03.01

개정 2017.06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의 취업과 창업대책을 수립·추진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취업지도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1. 취업·창업대책 수립 및 추진
2. 각 기업체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 취업 및 창업 확대
3. 취업·창업정보 수집 제공
4. 취업·창업지원 관련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은 취업정보센터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1년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 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시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7조(전문위원 및 자문위원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의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관계부서와 스쿨(원)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유지) 위원, 전문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기타) 본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